

# 단체협약 세부지침

2024.08.13.

조 항	내 용
제 11 조 (조합비의 징수)	"2 항" 단서. 쟁의기금 징수는 제외한다.
제 14 조 (기업의 사회적 책무)	회사는 선진 기업문화를 조성하고, 나아가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공헌기금 출연에 대하여 성과급 협의시 별도 협의한다.
제 18 조 (포상)	<p>"제 1 항" 10년 근속자에 대해서는 M-여행물을 통하여 20만 포인트를 지급한다.</p> <p>2020년 단협 합의에 의거 장기근속 포상 '금', 정년퇴직 기념품 '금', 퇴직시 포상 '금'에 대하여 '금' 지급 방식을 선택한 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.</p> <p>1. 2012년 8월 31일 이전 입사자에 대하여는 근속포상시 '금'을 다음과 같이 추가 지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5년: 금 1돈</li> <li>2) 10년: 금 5돈</li> <li>3) 15년: 금 8돈</li> <li>4) 20년: 금 12돈</li> <li>5) 25년: 금 15돈</li> <li>6) 30년: 금 20돈</li> </ol> <p>2. 2012년 9월 1일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는 퇴직하는 경우, 근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10년 이상~15년 미만 근속 퇴직시: 금 5돈</li> <li>2) 15년 이상~20년 미만 근속 퇴직시: 금 7돈</li> <li>3) 20년 이상~25년 미만 근속 퇴직시: 금 10돈</li> <li>4) 25년 이상~30년 미만 근속 퇴직시: 금 12돈</li> <li>5) 30년 이상~35년 미만 근속 퇴직시: 금 15돈</li> <li>6) 35년 이상 근속 후 퇴직시: 금 20돈</li> </ol> <p>[회의록 기재사항]</p> <p>1. 현 재직자(2020.07.31)에 대하여 장기근속 포상 '금', 정년퇴직 기념품 '금', 퇴직시 포상 '금' 제도는 ①'금' 지급방식, ②'현금' 지급방식 또는 ③'기본급화' 방식 중 택1(8월 中) 한다. 단, 금번 선택 이후 변경 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'금' 지급 선택 : 기존 기준</li> <li>2) '현금' 지급 선택 : 기존 '금' 지급 기준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지급시기: 10월 초에 별도 지급(ERP계좌)한다.</li> <li>나. 지급기준: 매년 장기근속 '금' 매입 시기의 시세를 적용하며, '금' 매입 시점</li> </ul> </li> </ol>

조 항	내 용
	<p>은 별도 공지하고, VAT 및 매입수수료를 제외한 기준으로 지급한다.</p> <p>3) '기본급화' 선택</p> <p>장기근속 포상 '금' 및 정년퇴직 기념품 '금'은 2020~2024년 5년간 현행 유지하고, 2025년부터 발생하는 '금'(장기근속 포상 '금' 및 정년퇴직 기념품 '금', 2012.09.01 이후 입사자에 적용되는 퇴직시 포상 '금')에 대해서는 2020.09.01 부로 기본급으로 先 전환한다.</p> <p>[회의록 기재사항]</p> <p>장기근속자 노후설계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</p> <p>1. 교육 과정: 100 세 맞춤형 인생설계 과정(I·II·III)</p> <p>가. I 과정: 만 50 세 대상 (2020 년부 실시)</p> <p>나. II과정: 만 55 세 대상 (2018 년부터 경과조치로 만 55 세~59 세 대상 인원을 3 년에 걸쳐 시행)</p> <p>다. III과정: 만 60 세 대상</p>
<p><b>제 20 조</b> (정년퇴직)</p>	<p>매년 12 월 말일부로 퇴직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기준에 의거 연차수당을 지급한다.</p> <p>"2 항" 단서. 계속 근무가 곤란한 신체상 또는 정신적 중증 장애라 함은 초진 8 주 이상의 의사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를 말한다. 단, 정년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공로패, 기념품(금), 정년유급휴가는 제외한다.</p>
<p><b>제 21 조</b> (휴직)</p>	<p>"3 호" 단서. 15 개월 휴직 후 3 개월 범위 내에서 무급으로 휴직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.</p> <p>"6 호" 단서</p> <p>(1) 휴직기간: 해당 교육기관의 최소 이수기간만 인정</p> <p>(2) 급여지급 無</p> <p>(3) 근속수당 및 제반 복지처우에 있어서는 근속년수를 인정하되, 퇴직금 산정시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한다.</p> <p>(4) 복직시 본인과 협의하여 근무조건에 대해 재조정한다.</p>
<p><b>제 22 조</b> (휴직자의 처우)</p>	<p>"5 항" 관련 기능직 지급률 적용 기준</p> <p>(1) 1 개월 미만 : 통상임금 75%</p> <p>(2) 1 개월 이상 3 개월 미만 : 통상임금 60%</p> <p>(3) 3 개월 이상 6 개월 미만 : 통상임금 50%</p> <p>(4) 6 개월 이상 : 통상임금 40%</p>

조 항	내 용
<b>제 35 조</b> (임금)	“3 항” (1) 일급 500 원 승급은 월급 22,933 원으로 적용한다. (2) 일급 600 원 승급은 월급 27,519 원으로 적용한다. (3) 일급 700 원 승급은 월급 32,106 원으로 적용한다.
<b>제 58 조</b> (유급휴일)	조합 창립기념일의 휴일은 11 월 두번째 금요일로 한다. (2025.01.01 부 적용)
<b>제60조</b> (연차휴가)	[반차휴가제도 시행] 1. 조합원은 평일 오후(주간조)에 한하여 반차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. (월 2 회 한도) 2. 조합원은 반차휴가 사용시 반드시 2 일전(근무일 기준)에 G-HRM 으로 신청하여야 하며, 라인 운영 등 사업운영 지장 등을 고려하여 소속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득할 경우에만 사용 할 수 있다. 3. 반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 라인간 대체 지원에 적극 협조한다. 4. 시행일 : 2021.06.01 부
<b>제 62 조</b> (경조휴가)	1. 기복휴가가 3 일 이내이고 사유발생일 당일 2 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, 희망자에 한해 익일부터 기산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. 2. 회갑휴가(칠순 포함)는 주민등록상 출생일 기준으로 당해 년도에 사용한다. 3. 입양특례법에 따른 ‘입양’에 한정 한다.
<b>제 67 조</b> (하기휴가)	하기 유급휴가 5 일 인정
<b>제 69 조</b> (생리휴가)	유산 또는 사산한 조합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유급휴가를 부여한다. 1.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(이하 ‘임신기간’이라 함)이 11 주 이내인 경우: 유산·사산한 날부터 5 일까지 2. 임신기간이 12 주 이상 15 주 이내인 경우: 유산·사산한 날부터 10 일까지 3. 임신기간이 16 주 이상 21 주 이내인 경우: 유산·사산한 날부터 30 일까지 4. 임신기간이 22 주 이상 27 주 이내인 경우: 유산·사산한 날부터 60 일까지 5. 임신기간이 28 주 이상 이상인 경우: 유산·사산한 날부터 90 일까지
<b>제 73 조</b> (일반교육)	조합원에 관한 연간 기본교육계획 수립 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한다.
<b>제 77 조</b> (건강진단)	1. 뇌혈관, 심혈관 중심의 정밀 종합진단 선택자에 대하여도 기본 종합검진 항목 중 암표지자 검사(간암, 대장암, 췌장암)를 실시한다. 2. 만 45 세에 해당하는 종합검진 대상자(직원 및 배우자)는 대장내시경과 갑상선

조 항	내 용
	<p>검사 중 선택하여 실시하도록 한다. 단, 검사 주기는 5 년으로 한다.</p> <p>3. 종합검진 당일에 유급휴가를 부여한다.</p>
<p><b>제 82 조</b> (재해자의 보호)</p>	<p>“3 항” 단서. 장애의 기준은 노동부의 장애기준에 의거 판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.</p>
<p><b>제 91 조</b> (복지후생)</p>	<p>1. 체육복 지급을 대체하여 선물 Mall에 매년 인당 5만 포인트를 지급한다.</p> <p>2. 의료비 지원은 매년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익년 3월에 지급한다.</p>
<p><b>제 92 조</b> (학자금)</p>	<p>현행 학자금(대학) 지급 기준을 유지하되, 최초 4년제를 입학하여 중퇴 후 2, 3년 제로 재입학 하는 경우에 한하여, 4년제 재학시 지급받은 학자금을 포함하여 최대 8학기를 한도로 지급한다.</p>
<p><b>제 101 조</b> (유효기간)</p>	<p>제6장의 임금부분이란 제35조(임금), 제36조(근속수당), 제37조(가족수당), 제38조(생산수당), 제39조(위해수당), 제40조(직급수당), 제41조(보직계장직무수행수당), 제42조(생산관리수당), 제43조(기능숙련수당), 제44조(월급제수당), 제45조(자격증수당), 제46조(상여금) 등 12개 조항을 말한다.</p>
<p><b>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지원</b></p>	<p>회사는 2022 년 단체보험 신규가입 중단에 따라 우리사주 지원 제도로 일괄 전환 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.</p> <p>1. 신규대상자 : 회사는 5 년 근속에 달한 자에 대하여 익년 1 월 1 일 부로 20 년 간 우리사주지원금 월 15,000 원을 지원한다.</p> <p>2. 현행 단체보험 가입자(1 차) : 회사는 현행 단체보험 가입자(1 차)에 대하여 10 년 만기 도래 이후 10 년간 우리사주지원금 월 15,000 원을 지원한다.</p> <p>3. 기타 : 우리사주지원제도는 1:1 대응출연이 원칙이며, 퇴직자는 퇴직시 까지만 지급한다.</p> <p>4. 시행일 : 2022.01.01 부</p>

“끝”